

### 미지급 법인세 문의

**Q** 당사는 2022년도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고지금액 차이로 납부할 세액과 미지급으로 계상된 법인세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차) 법인세비용                   (\*\*\*)  
       미지급법인세                   \*\*\*

**A**        귀사의 의견대로 추징세액에 대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하면 됩니다.

### 전대 임대업 국문 처리

**Q**        당사에서는 현재 임대 하여 사용하는 당사 창고에 대한 임대료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대임대)  
 현재 계약은 완료되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1. 이때, 이 전대임대로 인한 이익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가 비용 차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전대임대로 인한 이익은 잡수입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대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에 임대사업 추가하여야 합니다.

### 퇴직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균등한 보너스

**Q**        하기 내용 관련해서 원천징수 및 기타 tax issue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2023.01.03일 직원 퇴사

2. 대표이사가 경영성과가 좋은 관계로 계량적 측정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500 지급하기로 2023년 9월 1일에 결정함.
3. 기준은 2022. 12. 31까지 재직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
4. 2023.01.01 이후 퇴사한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하기로 함.
5. 지급은 2023.10.25에 모두 지급 예정임.

질의 사항)

1. 2023년 1. 1이후 퇴사한 전 직원에게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5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 하고 근로소득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보너스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2. 기타 tax issue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A**

퇴직자에게 퇴직이후 지급하는 보너스 등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폐차 후 발생 수익

**Q**

우리원에서 진행한 폐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현황)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진행하였으며, 3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폐차 완료 후 발생하는 수익(차량에서 나오는 고철 등))
- (질의사항) 폐차 후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연구원 철스크랩(고철거래)계좌로 입금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계좌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법인은 고철 거래시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